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64
------	-----

2021. 12. 2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채인묵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8.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12. 20) 상정,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채인묵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15조제7항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업비 정산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업무수행 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었음.
-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와 의견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대해서도 위 법령과 동일하게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가 결산서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적합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두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 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제7항·제8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회계감사’ 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 로 변경하여 정의를 추가하고, 기존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만이 수행해오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사업비 정산 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어 신설(안 제2조제6호)

- 개정안은 조례의 용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 를 신설해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 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의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를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감사’ 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로 변경해 민간위탁사무의 사후 관리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라는 용어 또한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감사’의 일종인 ‘이행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음1).

다.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안 제15조 제7항·제8항)

- 안 제15조제7항은 기존 조례의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와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사업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시장이 사전에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사업비 결산검사인’으로 변경해 세무사와 세무법인 또한 사업비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5조 제8항).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u>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u> 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회계감사</u>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u> -----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회계감사의 정의는 업무감사, 이행감사, 재무제표감사를 포괄하며, ‘사업비 정산 감사’는 이행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

<p>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u>사업비 결산서 검사</u> ----- ----- -----.</p> <p>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p>
<p>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u>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u>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⑨ (생략)</p>	<p>⑧ ----- <u>독립된 사업비 결산 감사인</u> ----- ----- -----.</p> <p>⑨ (현행과 동일)</p>

- 현재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와 결산에 대한 관계법령이 부재하여, 조례와 자체지침(‘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방법을 ‘회계감사’로 할 것인지 ‘사업비 결산 검사’로 할 것인지는 자치입법권 범위 안에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수탁기관의 결산서 검사시 세무사를 포함해 전문가 활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편의와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경기도의회 입법사례를 보면,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 검증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

-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계기록을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²⁾이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나열된 업무 외에 ‘사업비 정산 검증업무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임.

-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 측과 ‘세무사’ 측 간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측에서는 개정안은 용어와 관계없이 회계서류에 대한 검사, 조사 등을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을 위배하며, 세무사 측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 검사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세무사 측에서는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 절차가 ‘공인회

2) 그 명칭을 불문하고 회계서류를 일정기준에 따라 감사, 조사, 검증, 검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임.

계사' 만이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결산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한편, '결산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한 조례개정 가능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 법률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의회 법률자문 결과>

	변호사 A	변호사 B	변호사 C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세무사 수행가능 여부	가능	가능 ³⁾	가능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공인회계사 이외에도 세무사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있어 기존 '회계감사'라는 용어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이해될 수 있어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 상승으로

3) 다만, 변호사B는 '결산서에 대한 세무검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힘.

이러므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를 넓히고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최근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가 예정되고 있는 점, 조례 개정시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업무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관련 법률자문내용

- 경기도 조례 개정안
 - 1차 : 사업비정산 검증인으로 세무사(세무법인) 추가
 - 2차 : 사업비 정산 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변경 후 세무사(세무법인) 추가
- 금융위원회 검토의견
 - 1차 : 사업비 정산 검증업무는 회계사의 고유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업무에 해당
 - 2차 : 자구 수정에 불과하며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검증 업무라는 차원에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 의견
 - 공식 의견 미회신
(유선회신: 세무사법에 나열된 업무 외 별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세무사법 위반은 아님)
- 경기도의회 : 본회의 의결(2019. 5.28)
 - 세무사를 사업비 정산 검증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수탁기관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됨
 -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안 무효소송 등 사법적 판단 대응 필요
- 경기도 : 재의요구 예정
 - ※ 금융감독위원회 재의요구지시 예견 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인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64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인호, 노식래, 송아량,
이은주, 김태호, 정진철,
정진술, 조상호, 이승미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 제15조제7항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업비 정산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업무수행 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었음.
-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와 의견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대해서도 위 법령과 동일하게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가 결산서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적합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두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 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제7항·제8항)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제15조제8항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동일)</p> <p>6. <u>“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p> <p>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u>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u>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동일)</p> <p>⑦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u>----- -----, <u>사업비 결산서 검사</u>----- -----.</p> <p>1. <u>「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u></p> <p>2. <u>「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u></p>

<p>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u></p> <p>⑧ ----- 독립된 사업비 결산 감사인 ----- -----.</p> <p>⑨ (현행과 동일)</p>
---	--